



## Korean Accounting and Audit Newsletter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Accounting & Audit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I.	주요 회계 동향	3
II.	주요 규제 동향	5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11
IV.	특별주제	15



# I. 주요 회계 동향



## 기준서 개정사항

명칭	공표 예정일	시행일
K-IFRS 제1012호 '법인세'	2021년 12월	2023년 1월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1년 12월	2023년 1월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2021년 12월	2023년 1월

### K-IFRS 제1012호 '법인세':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된 이연법인세

IAS 12의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면제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하며, 이 예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은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는 거래에 대해서는 최초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개정 내용은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 또는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함

개정 내용은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그리고 사후처리의무 및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에도 적용됨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IAS 1 과 IFRS 실무서 2 개정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IAS 1의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함

기업이 중요한 회계정책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IAS 1을 추가로 개정하며, 회계정책이 언제 중요해지는 지에 대한 사례가 추가됨. 이 개정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IASB는 IFRS 실무서 2에서 기술하고 있는 '중요성 과정의 4 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도 개발함

IAS 1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됨. IFRS 실무서 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추정의 정의를 명확화

IAS 8은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회계추정'의 정의로 대체하기 위해 개정됨.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은 "측정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의 화폐금액"임.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새로운 상황으로 야기되는 회계추정의 변경은 오류수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그리고 회계추정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투입변수와 측정기법의 변경효과는 전기오류의 수정으로 야기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임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 I. 주요 회계 동향



## 질의 회신 등

- 금융감독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 IFRS 해석위원회: 주요 Agenda Decision

###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 ✓ K-IFRS : 2021년에 회신된 내용 중 외부에 공개된 질의회신은 없습니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 2021년에 회신된 내용 중 외부에 공개된 질의회신은 없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 ✓ K-IFRS : 2021년에 회신된 내용 중 외부에 공개된 질의회신은 없습니다.
- ✓ 일반기업회계기준 : 2021년에 회신된 내용 중 외부에 공개된 질의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제목 등	기준서
2021-G-KQA00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총액인수수료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2021-G-KQA002	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2021-G-KQA003	집합투자기구의 대출취급(차입)수수료 및 판매자문 수수료의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 관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향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6을 적용함

14.6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식에 기재한다.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한다.

### IFRS 해석위원회

재고자산 판매에 필요한 원가 (2021년 6월)

- ✓ 이슈: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결정할 때 판매에 필요한 원가의 범위
- ✓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 요약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측정할 때,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판매에 필요한 모든 원가를 포함해야 함.  
(증분원가만을 포함하는 것은 기준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 기업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재고자산의 성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매에 필요한 원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함

## II. 주요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업종 사전예고

28 June 2021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 이슈 별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1) 선정 배경

회사 및 감사인이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함에 따라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중점점검 대상 회계이슈 및 업종

-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징후 검토 (실적 약화가 우려되는 업종 유의)
  - 손상평가(회수가능가액 추정 등) 수행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등의 합리적인 근거
- ※ (업종) 제조업(석유정제, 철강, 자동차), 도·소매업, 항공운송업, 정보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른 수익인식 ①고객과의 계약식별 ②수행의무 식별 ③거래가격 산정 ④거래가격을 수행의무 내 배분 ⑤의무이행시 수익인식
  - 거래의 객관적 증빙 및 실질 유의
  -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식 공시
- ※ (업종) 전 업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2022  
중점점검  
회계이슈

- 금융부채 분류에 따른 측정의 적정성 당기손익·공정가치 부채, 금융보증계약 등
  - 손상평가(회수가능가액 추정 등) 수행 금융위험(유동성위험, 시장위험 등) 질적·양적 정보
- ※ (업종) 제조업(음료, 금속, 기계·운송장비), 건설업, 운송업

-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비용 표시 재무구조 취약기업 등 유의
  - 영업부문 관련 주식 공시 보고부문별 정보(당기손익, 자산 등) 및 지역별, 주요 고객별 수익 등에 대한 정보
- ※ (업종) 전 업종

## II. 주요 규제 동향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1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2년 중점 점검분야

30 June 2021

한공회는 '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고, '22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1) 선정 배경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이 이에 대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중점점검 4대 회계 이슈

- 특수관계자 대여금 등 회수가능성
- 특수관계자거래 수익인식요건 충족, 거래의 경제적 실질 반영 여부 및 주식공시 적정성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및 주식공시 적정성

-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
-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타당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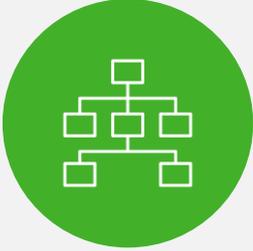
-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 지분법회계처리(지분변동, 배당금, 피투자기업 재무제표 신뢰성 검증)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 적정성

-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세소득 발생가능성” 검토 내역 적정성
-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누락 여부

중점점검  
4대 회계  
이슈

## II. 주요 규제 동향



내부회계관리  
제도운영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 등 개정 안내

2 July 202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 (1) 제·개정 배경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개념체계 및 적용의견서 일부를 제·개정하고,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이행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법 등 제·개정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新 모범규준 등의 변화된 구성체계>

설계 및 운영	평가 및 보고
설계·운영 개념체계	평가·보고 적용기법
(일반) 설계·운영 적용기법	(일반) 평가·보고 적용기법
중소기업 설계·운영 적용기법	중소기업 평가·보고 적용기법

#### (2) 제정근거

적용대상	개념체계	모범규준	적용기법
상장대기업	전반내용	전반내용	(일반) 적용기법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중소기업 적용기법
비상장중소기업	부칙	부칙	

#### (3) 주요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Components), 17가지 원칙(Principals) 및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Point of Focus)은 상장대기업과 상장중소기업(또는 비상장대기업)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이를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에 비해 유연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4) 시행시기

新 모범규준 등의 적용시기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II. 주요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12 July 2021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1) 추진 배경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이에 대한 외부감사의 적정성이 감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 ①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 ②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3년), 5천억원 이상('24년), 기타('25년)
-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 예정('21년 4/4분기)

#### (2) 감리운용 방향 및 시행일정

구분	회사 재무제표	감사인
계도기간		
감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b>고의적인 회계부정</b>이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li> <li>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li> </ul>	
감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부통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기준서에서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예,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의 수립 여부,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li> </ul>
계도기간 이후 본격감리		
감리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제표 감리과정에서 고의적인 <b>회계부정 및 중과실</b>이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li> <li>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한 경우</li> </ul>	
감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과정 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판단의 영역이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예, 운영 테스트의 대상, 핵심통제 선정기준 등)</li> </ul>

개별·별도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II. 주요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4 July 2021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의 조정 및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 (1) 개정 배경

COVID19로 인한 해외 출장 불가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시행시기를 조정,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2) 주요 내용

##### 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 (안 부칙 제3조)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u>시행시기를 1년 연기함(*)</u>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가능.  (* ) 자산 2조원 이상('22년→'23년), 5천억원 이상('23년→'24년), 기타('24년→'25년)

## II. 주요 규제 동향



금융감독원

###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14 September 2021

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되었으므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더욱 신뢰성을 제고하여 작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회계감리(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공시서류(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외부감사법) 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한 경우 부과

구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
회사	대상법인·서류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관계자	대상자	•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 (2) 감리 관련 과징금 부과현황

-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최근 3년간('19.1월 ~ '21.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외부감사법) '20년부터 부과(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 (3) 시사점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감사 등 회사관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 있는 작성에 노력할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관련 주요 FAQ

##### 1.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핵심통제를 꼭 선정하여야 하나요?

외감법이나 모범규준 등에서 핵심통제의 선정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보다는 핵심통제에 집중하는 것이 위험기반의 접근방법에 부합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계정과목이나 주식과 관련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통제활동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통제들은 때로 보완적으로 혹은 중복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핵심통제는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의 주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 즉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항의 왜곡표시를 줄이기 위한 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핵심통제를 선정하는 이유는 중요한 재무보고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통제에 대하여 테스트를 집중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상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9 참조)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관련 주요 FAQ

##### 2. 핵심통제를 판단한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선정한 핵심통제와 감사인이 선정한 핵심통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가 선정한 핵심통제가 다르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운영실태 보고나 감사(위원회)의 평가 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인의 테스트 결과 특정 통제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동 통제가 회사의 핵심통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통제가 회사의 핵심통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핵심통제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 관련 주요 FAQ

### 3. 중요한 취약점이란 무엇인가요?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하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16).

**중요한 취약점이란 하나의 유의한 미비점 또는 여러 유의한 미비점의 결합으로서 재무제표 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reasonable possibility) 경우(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16.1)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무제표 왜곡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왜곡표시 또는 오류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취약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3).

- 금액이 중요하지와 관계없이 고위 경영진에 의한 부정이 발견된 경우
- 중요한 왜곡표시의 수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써,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회사의 외부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회사가 제출한 최초 재무제표(주총 6주전 제출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 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 수정사항의 원인이 되는 통제활동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반영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 [금감원 보도자료]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전기 대비 비적정의견의 비율이 감소
-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감사의견 현황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불과 5사(1.2%)로, 전기 대비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
  - 이는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대형 상장법인의 준비·대응 시간이 비교적 충분하였고, 중·대형상장법인이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향후 내부회계 감사 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할 예정
  -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내부회계 감리도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위주로 운영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이해관계자(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와 긴밀히 소통하여 시장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한 뒤 알맞은 지원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
- (\*) 자산 1천억원 ~ 5천억원('22년) → 자산 1천억원 미만('23년)  
(\*\*) 자산 2조원 이상('22→'23년), 5천억원~2조원('23→'24년), 5천억원 미만('24년→'25년)

### 2.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감사(위원회)의 '20회계연도 내부회계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상장법인은 1사로 전기와 동일
-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회사 대표자와 동일하게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 [금감원 보도자료]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 전기 대비 비적정의견의 비율이 감소
- 중·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3. 중요한 취약점 & 유의적 미비점 유형

#### (1) 중요한 취약점

-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상장법인의 중요한 취약점(12건)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 11건, 내부통제 본질 요소 관련 1건으로 구성
- 지난해와 달리 내부통제 본질 요소(1건) 및 회계정보 전반 통제(1건) 등 관련 중요한 취약점도 지적되었으며,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제한으로 의견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

#### 비적정의견 사유: 중요한 취약점 및 범위 제한

구분		FY2019	FY2020
중요한 취약점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li> <li>-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li> <li>- 리스 회계처리</li> <li>-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 인식</li> <li>- 금융상품 회계처리 정확성 검토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li> <li>- 유형자산 손상</li> <li>- 중속기업투자주식 평가</li> <li>- 원가 인식</li> <li>- 유형자산 인식 등</li> </ul>
	회계정보 전반통제	-	- 재무제표 작성 및 정확성 검토
	내부통제 환경구축 미흡	-	- 내부회계 운영 수준 및 통제환경 수준 미흡
범위제한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 (2) 유의적 미비점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높은 수준이며, 이 외에도 정보기술통제(ITGCs) 미비, 회계정책 기준서 등 문서화 미비 등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회계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관련 중요한 취약점 비중(53.3%)이 높으며, 이는 결산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데 기인

### 4.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결과 비적정의견을 받은 5사 중 3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 나머지 2사는 내부회계 감사 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의견거절 또는 한정적의견을 받음
- 이는 재무제표 감사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 감사의견에서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내부회계는 향후에 작성될 재무제표에 중요한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
-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정보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

## IV. 특별주제



### 특별주제

####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 기후관련 Risk가 회사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와 관련된 주제들이 이슈화 되고 있고 특히 기후관련 Risk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후관련 Risk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여러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NRV) 측정시에** 회사의 경영진은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불용상태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규제환경의 변화, 재고자산의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유의적인 날씨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회사의 재화에 대한 수요감소 및 원재료의 수급제한에 따른 제조비용의 증가 등이 회사가 보유한 NRV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영업권,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과 사용 전 무형자산:** 환경관련 이슈들의 직간접적인 효과는 손상의 징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운영과 공정가치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관리와 관련된 규제사항의 변경은 손상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CGU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할 때 사용되는 시장참여자 관련 가정(Cash flow –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환경적인 사항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제품을 회사가 개발한다면, 회사가 기존제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객관계와 같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배기가스 배출량을 일정수준 이하로 통제하는데 실패하거나 회사가 위치한 땅의 오염도를 낮추도록 강제하는 규제사항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정부로부터 부과되는 벌금에 의해 회사는 손실을 입거나 의무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입법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줄거나 투입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 손실부담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체와 복구관련 부채:** 독성 폐기물 저장소의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해당 시설의 해체를 강제하는 법적의무나 원자력발전소 및 채굴장치의 해체를 요구하는 강제조항이 있는 경우는 해체 또는 복구관련 부채를 회사가 인식하고 측정하고 공시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기후관련 Risk는 환경규제가 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회사가 현재 보유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규제를 지키기 위해 회사가 미래에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나 또는 반대로 환경적인 의무를 잘 지켜서 회사가 과세기관으로부터 보장받는 세금혜택은 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IV. 특별주제



### 특별주제

#### Software as a service arrangements(SaaS)

IFRIC은 2021년 4월에 SaaS관련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는데, SaaS에서 발생하는 Configuration과 Customization 관련 비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나, 다른 모든 경우에는 비용이나 선급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IFRIC의 의사결정사항은 기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EBIT, PBT등의 주요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Software-as-a-Service (SaaS) 약정

최근 기업의 Technological architecture에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cloud-computing)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FRS IC는 Cloud 기술 중 특정 부분인 Software-as-a-Service(SaaS)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개의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agenda decision은 Infrastructure-as-a-Service나 Platform-as-a-Service와 같은 Cloud 기술의 다른 부분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2019년 3월에 발표된 첫 번째 agenda decision에서는 SaaS 약정이 무형자산이나 리스자산이 아니라 용역약정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인 회사가 공급자의 cloud infrastructure에서 운영되는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에 미래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며, 이에 따라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에 대한 지적재산은 공급자가 통제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두 번째 agenda decision은 SaaS를 implementation하는 과정에서 configuration 및 customization에 드는 원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 ✓ 제한된 상황에서 SaaS 약정을 implementation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특정한 configuration 및 customization 활동은 고객이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지적재산을 통제하는 별도의 자산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예를 들면 회사의 기존 on-premise 시스템에 대한 bridging module이나 맞춤형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 다른 모든 상황에서는 configuration 및 customization 원가는 운영비용임.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가는 configuration 및 customization 용역이 수행되는 대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며, 특정한 상황에서는 SaaS 계약기간에 걸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공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론은 EBIT, EBITDA, 세전손익 등의 측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특정 연도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그 영향이 중요하다면 과거에 자본화한 원가를 제거하여 비교표시 재무정보를 소급적으로 재작성 합니다.

IFRIC agenda decis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회계처리의 영향을 넘어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후속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측정치와 연계된 business metrics와 목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IV. 특별주제



### 특별주제

### Software as a service arrangements(SaaS)

IFRIC은 2021년 4월에 SaaS관련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는데, SaaS에서 발생하는 Configuration과 Customization 관련 비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만족하나, 다른 모든 경우에는 비용이나 선급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IFRIC의 의사결정사항은 기업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EBIT, PBT등의 주요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FRIC의 SaaS에 관한 Agenda Decision과 관련하여 다음의 Framework는 SaaS와 관련하여 기업이 어떻게 사실관계를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Stage	Title	주요내용
Step 1	IFRIC Agenda Decision의 Scope에 포함되는 SaaS 계약을 식별한다.	IFRIC Agenda Decision은 Could 서비스 중 특정한 부분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Software 등의 계약이 해당 Agenda Decision의 Scope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갖는 권리가 공급자의 Infrastructure와 방화벽안에서 접근만 할 수 있는 권리인지</li> <li>- 클라우드 공급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li> <li>- 공급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등</li> </ul>
Step 2	식별된 SaaS계약내의 비용을 활동과 종류별로 세분화한다.	1단계에서 SaaS로 식별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에 있는 서비스 및 활동의 종류를 세분화하여야 합니다. (예: 소프트웨어 Configuration, bridging or integration modules)
Step 3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될 수도 있는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이 있는지 식별한다.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될 수도 있는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에 대해 추가 분석을 수행합니다. 다음의 질문사항들은 이러한 분석에 도움을 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이 새로운 Cloud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운영하는 On-Premise 소프트웨어를 보유할 것인지</li> <li>- 기업에 추가 기능을 생성하고 기존의 On-Premise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On-Premise 소프트웨어를 변경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생성했는지</li> </ul>
Step 4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남아있는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관련 원가를 분석한다.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남아있는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 관련 원가를 분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SaaS supplier</li> <li>• Third parties</li> <li>• Employees or in-house contractors.</li> </ul> <p>Third Parties와 Employees or in-house contractors 범주로 분류된 활동은 Configuration이나 Customization이 일어날 때 비용화 하며, The SaaS supplier 추가 분석을 수행합니다.</p>
Step 5	SaaS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다.	The SaaS supplier의 활동으로 구분된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은 비용 인식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활동이 SaaS에 접근하는 활동과 구분이 되는지 결정합니다. 다음의 질문사항들은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활동이 구분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이 공급자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지</li> <li>- 기업이 Configuration 또는 Customization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 등</li> </ul>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